

## 1. 국가 산업안전보건 규제 체계

### 1.1 산업안전보건 규제 체계 설명

#### 개요/인용

중국 산업안전보건의 법률 구조는 헌법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법률, 행정 규정, 지방 규정, 부령, 지방령 및 산업안전보건 표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산업안전보건 법률로는 근로안전법, 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광산안전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화재예방법, 비상대응법 및 형법이 있다. 주요 규정으로는 탄광안전검사규정, 탄광 사고 예방에 관한 국무원 특별 규정, 건설사업안전관리규정,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 규정, 불꽃놀이 및 폭죽 안전관리규정, 작업안전허가규정, 토목용폭발물안전관리 규정, 특수장비안전검사규정, 농업용 기계류의 안전 검사와 관리 규정, 심각한 안전사고 파악 행정 책임에 관한 규정, 근로상해보험규정 및 근로 안전사고의 보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노동법 (1994년 7월 5일자)

중국고용계약법 (제10차 NPC(전국인민대표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5호)

중국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규정 (2011년 중국국무원령 제591호)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칙 (국무원령 제619호)

독극물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의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 (제57차 국무원 임원회의에서 채택됨)

## 2. 적용 범위 및 예외

### 2.1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안전보건

#### 개요/인용

“장비, 공구, 기기 및 기타 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2.2 근로자의 정의

### 개요/인용

“근로자”라 함은 기업, 민간 경제 조직, 국가 기관, 협회 및 공공 조직과 근로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한다.

### 참고자료

노동법 (1994년 7월 5일자) (제2조)

### 2.2.1 특정 분류의 근로자의 범위

#### 2.2.1.1 이주근로자

### 개요/인용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기업, 민간 경제 조직 및 중국 영토 내에서 이 기관들과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비고/해설

따라서 이주근로자는 명시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에 포함된다.

### 참고자료

노동법 (1994년 7월 5일자) (제2조)

#### 2.2.1.2 가사근로자

#### 2.2.1.3 재택근로자

#### 2.2.1.4 자영업자

### 개요/인용

노동계약법은 중국 영토 내에 있는 기업, 자영 경제 조직 및 민영 비기업단위와 같은 조직이 노동계약 체결, 이행, 수정, 폐지 또는 종료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적용된다.

### 참고자료

중국고용계약법 (제10차 NPC(전국인민대표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5호) (제2조)

## 2.3 사업주의 정의

### 개요/인용

중국 영토 내에 설립되어 있고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기업, 자영 경제 조직 및 민영 비기업단위와 같은 조직이 사업주에 포함된다.

### 참고자료

중국고용계약법 (제10차 NPC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5호) (제2조)

## 2.4 업종별 예외

### 2.4.1 농업

#### 개요/인용

포함됨.

### 2.4.2 건설업

#### 개요/인용

포함됨.

### 2.4.3 서비스업

#### 개요/인용

포함됨.

### 2.4.4 공공 부문

#### 개요/인용

관련 법률이나 행정 규정이 화재 방지와 안전, 도로 교통안전, 철도 교통안전, 해상 교통안전 또는 민간 항공안전에 대해 달리 명시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2조)

### 2.4.5 기타

## 2.5 산업재해의 정의

## 2.6 업무상 질병의 정의

### 2.6.1 업무상 질병 목록

#### 참고자료

업무상 질병 목록

### 2.6.2 그 외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하기 위한 체계

## 3.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기관 및 프로그램

### 3.1 산업안전보건 담당 국가기관

#### 개요/인용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중국근로안전법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근로 안전 감독과 관리를 수행한다.

(중국근로안전법 제9조)

국가는 산업보건 감독 시스템을 적용한다. 국무원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보건관리부서, 근로사회보장관리부서는 이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 국가 전반적으로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무원의 그 외 관련 부서는 자신의 각 기능 내에서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보건관리부서 및 근로사회보장관리부서는 각자의 기능에 따라 각 행정 구역 내에서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그 외 관련 부서는 각 기능에 따라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 급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보건관리부서, 근로사회보장관리부서(이하 통칭하여 “산업보건감독관리부서”라 함)는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공조하며, 또한 각자의 기능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부담한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9조)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9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3.1.1 목적, 역할 및 기능

#### 개요/인용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률에 따라 사업체가 근로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그리고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56조)

### 3.1.2 의장 및 구성

## 3.2 국가 산업안전보건 연구 프로그램 또는 기관

#### 개요/인용

업무상 질병 진단식별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보건부에서 발표한 '국가 업무상 질병 진단과 기술적 식별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위원회의 책무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정책과 입법 연구도 포함된다.

#### 비고/해설

중국안전생산과학연구원(CASST)은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AWS) 산하의 조직이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3.2.1 목적, 역할 및 기능

### 3.2.2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 3.2.3 자금 조달원

## 3.3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 **개요/인용**

국무원과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 경제와 사회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서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며, 해당 계획의 구현을 조직해야 한다.

### **비고/해설**

근로 안전의 경우, 법률적 조항은 없지만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것은 제12차 5개년 계획에 있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3.3.1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관한 협의**

# **4.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 **4.1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개요/인용**

사업체는 이 법률뿐만 아니라 근로 안전과 관련한 기타 법률과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굳건한 근로 안전 책임 시스템을 확립하며, 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

사업 담당자는 사업체 내에서의 근로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4조~제5조)

## **4.2 직접 고용 근로자가 아닌 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4.3 동일 작업장에서 2인 이상의 사업주 간의 협업**

### **개요/인용**

서로를 위협할 수도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작업장에서 동시에 근로하는 경우, 각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서로 공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40조)

### **4.4 작업 관련 근로자의 보건 감독**

#### **개요/인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 시, 고용 중, 퇴직 시 직장건강검진을 주선해야 한다.  
(제36조)

급성 업무상 질병 위해를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구조 및 치료를 실시하고, 시기적절하게 건강 검진과 의학적 관찰을 시행해야 한다.  
(제38조)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4.4.1 감독이 요구되는 특정 유해성**

### **4.5 작업 환경 및 작업 관행의 감독**

#### **개요/인용**

사업주는 국가 산업보건 표준과 보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근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

현장 테스트와 감독에 드는 비용은 생산비에 정확하게 계상해야 한다.  
(제42조)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4.6 개인보호구 제공 의무**

#### **개요/인용**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근로안전법 제37조)

사업주는 업무상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 보호 시설을 채택하고 근로자에게 개인용으로 업무상 질병 예방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2조, 제3조, 제26조)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37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4.7 개인보호구 사용 의무**

#### **개요/인용**

사업체는 사용 규칙에 따라 보호 물품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활용하도록 근로자를 감독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37조)

### **4.8 응급처치 및 복지시설 제공 의무**

#### **4.8.1 응급처치의 준비**

#### **개요/인용**

사업체는 자체 응급구조조직과 응급구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33조, 제69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4.8.2 위생 설비**

#### **개요/인용**

임산부용 탈의실, 욕실 및 휴게실과 같은 부수적 보건 시설이 있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15조(4))

유해물질 제조, 시판, 보관 또는 활용을 용도로 하는 작업장, 점포 또는 창고는 근

로자 기숙사와 동일한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시설과 근로자 기숙사 간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는 비상 탈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명확한 표지와 더불어 비상구를 구비해야 한다.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의 비상구는 막혀 있거나 닫혀 있어선 안 된다.

(중국근로안전법 제34조)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34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4.8.3 식수**

#### **4.8.4 휴게실 및 식당**

##### **개요/인용**

임산부용 휴게실과 같은 부수적 보건 시설이 있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5.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원칙 및 관행에 따라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 **5.1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제반 요소**

#### **5.1.1 안전보건의 책임 및 준비사항을 구체화하는 정책 또는 계획**

##### **개요/인용**

사업주는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를 위해,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에 관한 계획과 구현 방법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5.1.2 안전보건 담당자 임명

#### 개요/인용

사업체의 최고 책임자는 사업체의 근로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중국근로안전법 제5조)

사업주는 산업보건 관리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를 담당할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산업보건 관리 담당자를 임명하면서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21조(1))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5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5.1.3 위험성 평가서

#### 개요/인용

사업체는 주요 유해 설치물에 관한 파일을 등록, 유지하고, 정기 모니터링, 평가 및 통제를 시행해야 하며, 비상 대응 계획을 작성하고 근로자와 관련 직원에게 비상 시 취할 조치를 고지해야 한다.

사업체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지방 인민정부의 근로 안전 감독관리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에 주요 유해 설치물과 관련 안전 및 비상 대응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33조)

### 5.1.4 안전한 작업 체계 및 절차

#### 개요/인용

안전 장비는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에 따라 설계, 제조, 설치, 사용, 검사, 정비, 개량 및 철거해야 한다. 사업체는 정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장비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검사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29조)

### 5.1.5 위험성 교육훈련 및 안내

#### 개요/인용

사업체는 근로 안전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근로자를 교육 및 감독하며, 근로자에게 작업장과 근무 위치에서의 위험 요소, 예방 조치 그리고 비상 시 취할 조치를 진실하게 고지해야 한다.

(중국근로안전법 제36조)

사업주의 산업보건 관리 최고 책임자와 담당자는 산업보건 교육을 수료하고,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법률에 따라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를 주선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채용 시 산업보건 교육과 정기적인 고용 중 산업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보건 지식을 보급하며,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에 관한 법률, 규정, 규칙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를 감독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보호 장비와 개인용 업무상 질병 보호 물품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구를 통해 산업보건 지식을 얻고, 업무상 질병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에 관한 법률, 규정, 규칙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업무상 질병 보호 장비와 개인용 업무상 질병 보호 물품을 적절하게 사용 및 유지하며 그리고 업무상 질병 유해 사고의 위험 발견 시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전술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를 교육시켜야 한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35조)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36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5.1.6 예방조치 결과의 검토 또는 평가

### 5.1.7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들과의 협의

#### 개요/인용

사업체의 노동조합은 사업체에서 근로 안전의 민주적인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법률에 따라 근로 안전에 있어서 근로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근로안전법 제7조)

노동조합은 근로 안전에 관한 법률과 규정 위반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시정하도록 사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은 사업체가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거나 작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혹은 어떠한 사고 위험 발견 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업체는 그러한 제안을 고려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작업장 대피 방법을 마련하도록 사업체에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업체는 그 사항을 즉각 다루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제안을 할 수 있고, 사고에 대해 관련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국근로안전법 제52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41조)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7조, 제52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5.2 특정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또는 기준을 이행할 의무**

## **6.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성 및 역량의 가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 **6.1 산업안전보건 역량**

#### **6.1.1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지원에 대한 요건**

##### **개요/인용**

사업주는 산업보건 관리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를 담당할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산업보건 관리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6.1.1.1 전문가 또는 전문 서비스의 자격 요건**

### 개요/인용

유해물질 제조, 시판 또는 저장 회사 혹은 광업이나 건축 회사의 근로 안전 관리 최고 책임자와 담당자는 관할 당국이 시행하는 근로 안전 지식과 관리 능력에 관한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만 그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한 평가 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근로안전법 제20조)

의료보건 기관은 성, 자치구 또는 중앙 정부 직할시의 인민정부 산하 보건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서 업무상 질병 진단을 제공해야 한다. 성, 자치구 또는 중앙 정부 직할시의 인민정부 산하 보건관리부서는 자신의 행정 구역 내에서 업무상 질병 진단을 제공하면서 의료보건 기관 목록을 발행해야 한다. 업무상 질병 진단을 제공하는 의료보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의료 기관 인증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 (2) 업무상 질병 진단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의료보건 기술 직원을 보유해야 한다.
- (3) 업무상 질병 진단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기구와 장비를 갖춰야 한다.
- (4) 업무상 질병 진단에 효과적인 품질 관리 규칙을 보유해야 한다.

업무상 질병 진단을 제공하는 의료보건 기관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진단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44조)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20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6.2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임명

### 개요/인용

사업주는 산업보건 관리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를 담당할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산업보건 관리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6.2.1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임명이 요구되는 종업원 수

### 개요/인용

광업이나 건축 회사 혹은 유해물질 생산, 시판 또는 저장 회사는 근로 안전 관리 기구를 설치하거나 풀타임 근로 안전 관리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전술한 내용에 명시된 것 이외의 사업체는 근로자 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 안전 관리 기구를 설치하거나 풀타임 근로 안전 관리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는 근로 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요구하는 관련 전문 자격을 지닌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근로 안전 관리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19조)

### **7.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7.1 자신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7.2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7.3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감독자의 의무**

#### **개요/인용**

위험이나 비상 보고를 받는 사업체 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51조)

**7.4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상위직급자의 의무**

**7.5 자신 및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자영업자의 의무**

**7.6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건의 준수 의무**

### 개요/인용

작업 시 사업체의 근로자는 사업체의 근로 안전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며, 보호 장비를 정확하게 착용하여 사용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No. 7) (제49조)

## 7.7 위험성 및 예방조치에 관해 질문할 권리

### 개요/인용

사업체의 근로자는 작업장과 근무 위치에 있는 위험 요소, 예방 조치 및 비상 시 취할 조치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근로 안전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근로안전법 제35조)

근로자는 산업보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직장건강검진, 업무상 질병 진단, 치료와 재활 및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에 관한 기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또한 작업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위해 요소, 그러한 위해의 결과 및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고지 받는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무상 질병 보호 시설과 개인용 업무상 질병 보호 물품을 제공해 줄 것과 근로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40조(1)-(4))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35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7.8 위험 상황에서 피신할 권리

### 개요/인용

직접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을 목격한 사업체 근로자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가능한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에서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업체는 전절에서 언급한 비상상황 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비상 대피 조치를 취한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을 폐지하거나 혹은 임금, 복지 및 기타 대우를 줄이지 못한다.

(중국근로안전법 제47조)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강제 작업을 하거나 규칙과 절차에 반하는 지시를 따르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40조(6))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47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7.9 유해하지 않은 직무로의 전환배치 권리**

#### **7.9.1 근로자가 유해하지 않은 직무로 전환배치 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고 퇴직할 권리**

##### **개요/인용**

법률에 따른 근로 관련한 상해에 대한 사회보험 수당 외에도, 근로 안전사고로 인해 해를 입은 사업체 근로자는 사업체로부터 민사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배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48조)

### **8.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협업 및 협조**

#### **8.1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유사 기관**

##### **8.1.1 목적, 역할 및 기능**

##### **8.1.2 구성 및 위원장**

#### **8.2 위험성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

##### **개요/인용**

사업체 근로자는 작업장과 근무 위치에 있는 위험 요소, 예방 조치 및 비상 시 취할 조치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근로 안전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업체 근로자는 비판을 하고, 근로 안전 문제를 보고하거나 비난하며, 비정상적인 지시와 위험스러운 강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근로안전법 제45조~제46조)

근로자는 산업보건의 민주적인 관리에 참여하고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에 대해 의견과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40조(7))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45조~제46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8.3 안전보건 관련 대표자를 선임할 근로자의 권리**

### **8.3.1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기 위한 종업원 수 조건**

### **8.3.2 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대표의 적격성 조건**

## **8.4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기능, 권리 및 권한**

### **8.4.1 작업장 검사권**

#### **개요/인용**

중국의 산업안전보건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역할을 한다. 사업체 내에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사고나 업무상 질병 발생 시, 사고나 업무상 질병의 조사와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8.4.2 산업안전보건 정보 접근권**

### **8.4.3 면담 출석권**

#### 8.4.4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전문적 지원을 받을 권리

#### 8.4.5 감독관 동행권

##### 개요/인용

중국의 산업안전보건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역할을 한다. 사업체 내에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사고나 업무상 질병 발생 시, 사고나 업무상 질병의 조사와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8.4.6 시설 사용권

#### 8.4.7 직무수행을 위한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 8.4.8 시정통지 교부권

#### 8.4.9 사업주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권리

##### 개요/인용

노동조합은 업무상 질병 예방과 통제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주의 행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어떠한 심각한 업무상 질병 유해 발생 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강제 조치 채택과 관련하여 해당 정부부처에 제안을 제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 목격 시 위험 장소에서 대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그러한 제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8.4.10 위험한 작업의 중지를 지시할 권리

#### 8.5 사외 근로자 대표가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처리할 권리

8.5.1 작업장 출입권

8.5.2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조사할 권리

8.5.3 근로자들과 협의할 권리

8.5.4 근로자들에게 조언할 권리

8.5.5 강제이행 조치를 개시할 권리

8.6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8.6.1 근로자 대표의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참여

8.6.2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설치 조건

8.6.3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의 목적, 역할 및 기능

8.6.4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업무 기록

8.6.5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의사록 공유

8.7 산업안전보건 공동위원회 위원들의 의무 교육

8.8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8.9 산업안전보건 관련 권리 및 직무 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면제

9. 특정 유해성 또는 위험성

9.1 생물학적 유해성

개요/인용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은 생물학적 요소가 업무상 질병 유해 정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유해성도 다룬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9.2 화학적 유해성

### 9.2.1 취급, 보관, 식별표시 및 사용

#### 개요/인용

업무상 질병 유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화학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물질을 사업주에게 공급하려면 공급자는 중국어로 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제품 특성, 주 구성성분, 존재하는 유해한 요소, 발생 가능한 해로운 결과, 안전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업무상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응급구조 및 처치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품 포장지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 표지와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위험 물품 표지 또는 방사선 경고 표지가 상기 물질의 지정 저장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업무상 질병 유해 관련 화학물질이거나 최초로 중국에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그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체는 국가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해당 부서 승인을 얻은 후, 국무원의 보건관리부서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식별 보고서, 관련 부서가 발행한 등록이나 수입 승인에 대한 서류 그리고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 장비 그리고 방사성 물질 함유 물품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중국위험화학물질안전관리규정 (2011년 중국 국무원령 제591호)

### 9.2.2 사용자의 안전보건에 관련한 제조자, 공급자 및 수입자의 의무

#### 개요/인용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안전제일 정책, 예방조치 및 종합적 관리를 준수하여 기업의 주요 책임을 강화하고 구현해야 한다. 유해 화학물질을 제조, 저장, 사용, 취급 및 운송하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이하 '유해 화학물질의 단위체')는 그러한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유해 화학물질의 단위체는 법률, 행정 규정, 국가 기준 및 산업 기준의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 관리 규칙을 수립하며, 안전과 법체계에 관해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기술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검사 이후 적격

한 사람만이 작업을 할 수 있다. 자격을 요구하는 작업의 경우 관련 자격을 지닌 직원만이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단위체와 직원은 국가가 생산, 운영 및 사용을 금지한 유해 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단위체와 직원은 국가가 설정한 제약 규정을 위반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참고자료

중국위험화학물안전관리규정 (2011년 중국 국무원령 제591호)

## 9.3 인체공학적 유해성

## 9.4 물리적 유해성

### 9.4.1 살충제

### 9.4.2 이온화 방사선

#### 개요/인용

업무상 질병 유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화학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물질을 사업주에게 공급하려면 공급자는 중국어로 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제품 특성, 주 구성성분, 존재하는 유해한 요소, 발생 가능한 해로운 결과, 안전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업무상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응급구조 및 처치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품 포장지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 표지와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위험 물품 표지 또는 방사선 경고 표지가 상기 물질의 지정 저장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 장비 그리고 방사성 물질 함유 물품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해야 한다.

(제30조)

방사성 작업 현장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 운반과 저장의 경우, 사업주는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또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직원이 개인 피폭량 계이지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의료기관의 방사성 업무상 질병 유해 통제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이 법률에 따라 보건관리부서가 진행한다.

(제89조)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중국방사성오염예방통제법 (2003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호)

#### 9.4.3 진동 및 소음

#### 9.4.4 고소작업

#### 9.4.5 밀폐공간 내의 작업

#### 9.4.6 작업장 시설의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위험성

#### 9.4.7 극한 온도에 대한 노출

#### 9.4.8 화재 위험성

#### 참고자료

공장 및 산업기업(신고대상 작업장에서의 화재 예방)규정 (1981년 L.N. 214)

중국화재예방법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22조, 제23조)

#### 9.4.9 연초류

#### 9.4.10 석면

#### 참고자료

공장 및 산업기업(석면)규정 (1997년 L.N. 74)

#### 9.4.11 나노기술 관련 위험성

#### 9.4.12 작업장 내 에이즈 감염

### 9.5 심리사회적 유해성

#### 9.5.1 심리사회적 위험성

#### 개요/인용

장비, 공구, 기기 및 기타 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9.5.2 직장 폭력**

#### **개요/인용**

사업주는 직장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참고자료**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칙 (국무원령 제619호) (제11조)

### **9.6 기타 유해물질**

### **9.7 기계류**

#### **9.7.1 기계류 및 공구 관련 위험성**

#### **개요/인용**

사업체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커다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관련 시설과 장비에 눈에 잘 띄게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 장비는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에 따라 설계, 제조, 설치, 사용, 검사, 정비, 개량 및 철거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28조~제29조)

#### **9.7.2 기계류 조작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기계류 설계자 및 제조사의 의무**

#### **개요/인용**

건설 사업 시 안전시설의 설계자와 설계 회사는 안전시설의 설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26조)

### 9.7.3 기계류 설계자, 제조자, 수입자 또는 공급자의 정보 제공 의무

#### 개요/인용

공급자는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장비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경고 설명에는 장비 성능, 가능한 업무상 질병 유해, 안전한 운전과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업무상 질병에 대비한 보호, 응급구조 및 처치 수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9.7.4 승인/인증된 공급자로부터 또는 승인/인증된 경우에만 기계류를 구입해야 하는 의무

### 9.7.5 기계류 및 장비 유지보수

#### 개요/인용

신 기법, 기술, 물질 또는 장비를 사용하려면 사업체는 해당 안전 기술 특징을 연구하여 이해하고, 효과적인 안전 보호 조치를 채택하며, 근로 안전에 관한 특별 교육과 훈련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안전 장비는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에 따라 설계, 제조, 설치, 사용, 검사, 정비, 개량 및 철거해야 한다. 정상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장비에 대한 정기 정비와 테스트는 전문 자격을 갖춘 테스트 및 검사 기관이 수행해야 하며, 안전한 사용 증명서와 안전 라벨을 취득해야 한다.

(제29조, 제30조)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22조, 제29조, 제30조)

### 9.7.5.1 적용 장비 목록

#### 개요/인용

생명을 위협하거나 상당히 위험한 특수 장비 목록은 국무원의 특수장비안전감독관 리부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국무원에 제출하여 설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9.8 특정 취약 근로자의 보호 규정

### 9.8.1 직장에서의 임신부 보호

#### 개요/인용

탈의실, 욕실 및 휴게실과 같은 보건 시설을 임신부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15조(4))

임산부에게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작업 및 기타 임산부에게 금지되는 작업을 시키는 것을 금한다.  
(노동법 제61조)

여성 근로자의 임신 기간 동안 더 이상 할당 작업을 수행하기 힘든 임산부 근로자의 경우 작업량을 줄여야 하며, 관련 의료 자문에 따라 해당 임산부에게 대체 작업을 배정해야 한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임산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교대 근무를 배정 받지 않으며, 근로시간 내 일정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6조)

임산부는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독극물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 제63조(4))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노동법 (1994년 7월 5일자) (제61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국무원령 제619호) (제6조)

독극물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 (제57차 국무원 임원회의에서 채택됨)

### 9.8.2 직장에서의 수유 여성 보호

#### 개요/인용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수유하는 기간 중 국가에서 정한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근로와 수유기 동안 여성에게 금지되는 근로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해서는 안 되며, 이들

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과 야근을 금지한다.

(노동법 제63조)

사업주는 1세 미만의 영아를 육아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매일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여 1시간의 수유 휴식을 주어야 한다. 쌍둥이 이상을 낳은 여성 근로자의 수유 휴식은 아기 1명당 1시간씩 증가한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9조)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용 휴게실, 산부용 휴게실, 수유실, 그리고 여성 근로자가 생리적, 건강, 수유 육아 측면에서 겪게 될 특별한 곤란을 적절하게 줄여주는 기타 시설과 같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10조)

고용체는 수유기인 여성 근로자에게 독극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당해서는 안 된다.

(독극물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

## 참고자료

노동법 (1994년 7월 5일자) (제63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국무원령 제619호) (제9조-10)

독극물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 (제57차 국무원 임원회의에서 채택됨)

## 9.8.3 특정 작업, 과업 또는 교대근무에 대한 여성의 접근 제한

### 개요/인용

여성 근로자에게 갱내 근로 작업을 시키거나 혹은 국가에서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 강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기타 여성에게 금지된 노동을 시키는 것은 금한다. 생리 기간 중 여성 근로자에게 높은 곳, 저온, 찬물 작업을 시키거나 국가에서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작업을 시키는 것을 금한다.

(노동법 제59조~제60조)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된 작업 유형의 규칙을 준수하고 서면으로 금지 작업 유형을 여성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된 작업 유형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칙'의 부록을 따른다. 그리고 국무원의 국가안전관리부, 인적자원사회복지부, 보건부가 사회 경제 발전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목록을 조정한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4조)

#### 참고자료

노동법 (1994년 7월 5일자) (제59조~제60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칙 (국무원령 제619호) (제4조)

### 9.8.4 특정 작업, 과업 및 교대근무에 대한 연령에 따른 제한

#### 개요/인용

사업주는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 유해에 노출되는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39조)

사업주는 미성년 근로자에게 갱내 근로, 유독 또는 유해한 곳에서 일을 시키거나 국가에서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강도의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미성년 근로자”라 함은 16세 ~ 18세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노동법 제58조, 제64조)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노동법 (1994년 7월 5일자) (제58조, 제64조)

## 10. 사고/준사고 및 질병의 기록, 신고 및 조사

### 10.1 업무상 사고, 아차사고 및 업무상 질병의 원인을 기록 및 조사할 의무

#### 10.1.1 업무상 사고

#### 10.1.2 아차사고

#### 10.1.3 업무상 질병

### 10.2 산업안전보건 당국에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

### **개요/인용**

사업체에서 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있는 관련자는 즉각 그 사실을 사업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국근로안전법 제70조)

급성 업무상 질병 유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각 응급구조와 통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사고를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시기 적절하게 보고해야 한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38조)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70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11.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감독 및 시행**

### **11.1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임명**

#### **개요/인용**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각 행정 구역의 근로 안전 실태에 따라 관련 부서로 하여금 각자의 기능에 따라 행정 구역 내 중대 근로 안전 재해의 큰 위험성을 지닌 사업체에 대해 엄격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발견된 재해 위험을 시기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53조)

### **11.2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권한**

#### **11.2.1 작업장 출입권**

#### **개요/인용**

감독관은 감사, 관련 자료 검토, 그리고 관련 회사와 담당자 면담을 위해 사업체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56조(1))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11.2.2 검사, 시험 및 문의할 권한

### 개요/인용

감독관은 표본을 수집하고 자료를 검토하거나 복사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작업장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11.2.3 조사 권한

### 개요/인용

감독관은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유해성을 지닌 현장과 감사 중인 회사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11.2.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

## 11.3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시행 권한

### 11.3.1 명령 또는 통지의 교부 권한

#### 개요/인용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근로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에 대한 사업체의 시행 상태를 감독 검사하여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혹은 검사 시 발견된 근로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지정 시한 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따른 행정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률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법률과 행정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56조(2))

### 11.3.2 금전적 벌칙을 부과할 권한

#### 개요/인용

근로 안전 관리 당국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참고자료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11.3.3 면허 또는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권한

#### 개요/인용

검사를 담당하는 행정 당국은 사업체가 산업안전보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 11.3.4 위험한 작업의 중지를 요구할 권한

#### 개요/인용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근로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에 대한 사업체의 시행 상태를 감독 검사하여 검사 시 발견된 사고 위험을 즉각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중대 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전 혹은 제거하는 동안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위험 지역에서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도록 명령하고 생산이나 사업 중단 또는 사용 보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중대 사고 위험 제거 이후 검사를 실시하여, 생산이나 사업 또는 사용을 재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중국근로안전법 제56조(3))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유해 상태로 인해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제65조(1))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56조(3))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11.3.5 기소 개시 권한

### 11.3.6 기소 수행 권한

### 11.3.7 기타 집행 권한

#### 개요/인용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근로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에 대한 사업체의 시행 상태에 대해 감독 검사를 진행하여 근로 안전 보호에 관한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 장비 및 장치(증거자료에 근거하여 판단)를 압류하거나 압수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건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56조(4))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11.4 법원의 제재 조치

### 11.4.1 법인에 대한 금전적 벌칙

#### 개요/인용

금전적 벌칙의 범위는 USD 490 ~ USD 81555이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80조~제86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11.4.2 자연인에 대한 금전적 벌칙

#### 개요/인용

금전적 벌칙의 범위는 USD 490 ~ USD 81555이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80~제86조)

중국업무상질병예방통제법 (주석령 제60호)

### 11.4.3 비금전적 제재

#### 개요/인용

법률의 관련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위반 행위를 하는 회사는 위반 중단, 생산이나 사업 중지 또는 폐쇄에 대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불법 수입은 몰수되거나 그 책임자는 해임될 수 있다.

#### 참고자료

중국근로안전법 (2002년 주석령 제70호) (제77조~제95조)

### 11.4.4 형사상 책임

#### 개요/인용

공장, 광산, 나무 농장, 건설 기업 또는 기타 기업이나 기관의 근로자가 관리자에게 불복하거나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혹은 어떠한 사람이 규칙을 위반하여 유해한 상황에서 작업을 근로자에게 강제로 시켜서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재해를 유발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인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상 구금을 선고받는다. 상황이 특별히 명백한 경우, 해당 인원은 3~7년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공장, 광산, 나무 농장, 건설 기업 또는 기타 기업이나 기관의 운영상 안전을 위한 시설이 국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관련 부서나 단위체의 근로자가 경고를 한 이후에도 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러한 재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상 구금을 선고받는다. 상황이 특별히 명백한 경우, 해당 인원은 3~7년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 비고/해설

특정 작업장 사고와 관련하여 형법상 다수의 규정이 있다.

#### 참고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4조~제135조)

### 11.4.5 자연인에 대한 징역 기간

개요/인용

3~10년

참고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4조~제139조)